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1. 26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0년 11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10년 11월 26일)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이 용근

### 가. 개정이유

- (1) 총 4장, 3절, 51개 조항 및 부칙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부과징수, 제3장 체납처분 중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제2절 처분,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제4장 보칙 그 밖에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
- (2)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현행 「마포구세 조례」에 있는 지방세에 관한 통칙규정을 이관하여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의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 세목체계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구세 세목으로 명시, 부과, 징수사무와 납세증명서의 발급 위임사항,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서류송달의 방

## 법 등을 규정

- (3) 안 제6조의 2에서는 전국자동차등록제가 2010. 12. 1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사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 제30조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에서는 그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산송부하도록 규정하였고 2011. 1. 1부터 등록에 관한 면허세가 수탁기관의 자치구세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4) 안 제11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현행 마포구세 조례에 있는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규정을 이관하여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의 “제2장 부과징수”로 규정하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순위, 미납구세에 관한 임차인의 열람, 허가 등의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납기 전 징수와 압류, 구세환급금의 충당과 통지, 징수 유예의 신청, 처리, 취소, 납세담보의 요구 및 담보물의 보관 등을 규정
- (5) 안 제26조부터 안 제34조까지는 압류에 관한 사항으로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조건부 채권의 압류, 구세확정 전 보전압류, 수색, 질문, 검사권,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등을 규정

- (6) 안 제35조부터 안 제46조까지는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공매, 공매처분 유보, 압류재산의  
배분방법,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등을 규정
- (7) 안 제47조부터 안 제51조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근거, 소집 및 운영, 심사의결,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규정

###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 동 조례안은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구 구세기본조례 등에 관한 표준  
안」이 시달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  
득세 종업원분을 자치구세에서 특별시세로, 등록면허세와 취득 무  
관분 등록세를 자치구세로 세목 귀속체계를 재편하고 현행 「마포  
구세 조례」에 규정된 총칙 및 부과징수규정과 현행 「마포구세  
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마포구 구세기본조례로 이관하였고 특히 전국 무관할 자동  
차 등록관련 특례규정과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구세 등에 대하여  
열람,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자치구 구세기본조례 등에 관한 표준안」의 기준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서 관련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에도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  
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  
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